
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· 운영 관련 Q&A

2023. 6. 1.



보건복지부
요양보험운영과

CONTENTS

1.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및 설치장소 1
2. CCTV 미설치 동의 및 침실 촬영 동의 4
3. CCTV 운영 및 관리 8
4. CCTV 열람 및 제공 13

1

CCTV 설치 의무화 대상 및 설치장소

Q1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?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.

Q2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?

- 각 공동거실(침실과 연결되는 복도포함), 침실, 현관(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)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,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여야 합니다.
 - 다만, 침실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.

Q3 촬영을 하지 않는 침실도 CCTV 필수 설치 장소인가요?

- 침실도 필수 설치장소입니다.
 - 다만, 촬영 동의를 받지 못한 침실은 녹화기 연결선 등을 뽑아 촬영 및 녹화가 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.

Q4 필수 설치장소 중 공동거실(침실과 연결되는 복도포함)에서 복도는 어디를 의미하나요?

-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인 침실과 공동거실을 이어주는 복도를 말합니다. (침실에서 나와서 공동거실로 이어지는 복도)
 - 시설 내 모든 복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
 - 예) 1층에 사무실, 요양보호사실만 있는 경우 1층 복도는 의무설치장소 아님

Q5 엘리베이터에도 설치가 의무인가요?

-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필수 설치입니다.
 - 상가건물 또는 다세대 주택 등에서 운영하여 건물 내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필수 설치장소에서 제외됩니다.

Q6 필수 설치장소 외에 추가 설치할 수 있나요?

-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은 수급자, 보호자, 종사자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.
예) 현관문 외 부출입문, 기관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, 안전 관리 및 보안에 중요 공간 등

Q7 CCTV를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가 있나요?

-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·운영해서는 안 됩니다.
 -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.

Q8 CCTV 촬영·녹화 시 동작감지기능 설정이 가능한가요?

- CCTV 설치 의무화 기관은 입소자가 24시간 생활하는 곳입니다.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.
 - 수급자의 생활공간인 침실, 공동거실(복도포함)은 24시간 상시 촬영·녹화해야 합니다. * 동작감지기능 설정 불가

- 다만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 등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야간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하여 입소자 출입 제한으로 운영한다면, 운영시간 이후에는 동작감지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.
- 입소자의 주 생활·이용장소가 아닌 엘리베이터, 현관은 24시간 동작 감지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.

Q9 CCTV에 녹음 기능을 설정하여 촬영·녹화가 가능한가요?

-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.
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Q10 CCTV 설치 시 갖추어야 할 성능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CCTV는 공동거실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,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녹화(저장)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또한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[HD]급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,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.

Q11 CCTV 설치하지 않고자 합니다.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CCTV 미설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- 동의 여부는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 시 정한 당해 연도 1년(1.1~12.31.)의 범위에서 유효합니다. * '23년의 경우 6.22.~12.31.
- 면제 기간 이후에는 다시 미설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해야 합니다.

■ 신고·처리의 예시 ■

-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미설치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('23.6.23. 신고)
- ② 지자체장은 면제 기간('23.6.23. ~'23.12.31.)을 정해 신고 수리
-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'24년에도 CCTV 미설치하려면 다시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 * '24.1.31.내에 신고(익월을 넘지 않아야 함)
- ④ 지자체장은 면제기간('24.1.1. ~'24.12.31.)을 정해 신고 수리

- 지자체장은 면제 기간 이후 재신고 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·운영을 현황을 점검하고 미설치·미운영(미관리) 시, 시정명령을 해야 합니다.

Q12 설치된 CCTV를 관리하지 않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-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CCTV 미운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Q13 필수 설치장소 중 일부 장소에 미설치 할 수 있나요?

- 필수 설치장소 중 침실 등 일부 장소에 CCTV를 미설치하려면 해당 장소 미설치에 대한 동의를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에게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-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와 동일한 서식 사용 및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.
- * 동의서에 미설치 장소를 명시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에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 받아야 함

Q14 수급자 전원의 동의와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둘 다 필요한가요?

-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. 다만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.
-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.
- * CCTV의 미설치 동의, 침실 촬영 동의, 열람의 다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주계약자를 우선으로 함

Q15 시설 내 침실이 여러 실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비동의 하는 경우 전체 침실 촬영을 할 수 없나요?

- 각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예) 201호실(4인실) 4명 전원이 촬영 동의 → 촬영 가능
202호실(4인실) 4명 중 3명만 촬영 동의 → 촬영 불가, 202호실은 녹화기 연결선 등을 뽑아 촬영 및 녹화가 되지 않도록 운영

Q16 해당 침실 수급자 전원 (미)동의로 (미)촬영하던 중 수급자의 침실이 변경되거나 신규 수급자가 입실한 경우 등 변경 시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?

- 침실이 변경된 수급자의 경우 사전에 받은 동의서에 따라 촬영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, 신규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 시 동의를 받아 해당 침실에 적용하면 됩니다.
-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입소 중 촬영/미촬영 동의여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.

Q17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, 그 보호자,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수급자가 인지저하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 본인의 동의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같음합니다. * 동의서에 사유 적시
-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, 이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신고 절차에 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.

*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시 운영·열람 등에 대해서는 CCTV에 준하여 운영함

Q18 CCTV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?

- 시설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(담장) 두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,
- 입소자, 보호자, 종사자 등이 본인의 영상이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. *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도 동일

Q19 CCTV 안내판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안내판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입니다.
 - *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시설의 전화번호를 기재
-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재설치합니다.

Q20 시설 내 리모델링 등 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 중 CCTV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CCTV 운영을 중지할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 전원으로 부터 CCTV 미운영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- CCTV 미운영 신고서에 신고내용, 운영 중지 기간 등을 작성 후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※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에 준하여 운영

Q21 CCTV 설치 후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‘CCTV 내부 관리계획’을 작성해야 하며,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- * 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됨(1차 25만원, 2차 50만원, 3차 75만원)
- 내부 관리계획은 기관 내 안내 게시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.
 - * (게시방법) 장기요양기관정보시스템 → 요양자원 → 장기요양기관관리 →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공지사항 탭에 첨부파일 업로드

Q22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담당자의 개념?

- “모니터링”이란 특정 시간(ex.야간시간)에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종사자 근로 감시,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안됨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 관리책임자가 되며, 관리책임자 이외에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 등 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-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
Q23

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?

- 관리책임자 및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종사자(운영 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)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, 교육 이수(수료)증은 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Q24

CCTV 영상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?

-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해야 하며, 접속기록(로그인 기록)이 남도록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
- * 해킹방지 등 보안을 위해 초기설정 암호변경, 주기적으로 암호변경하고 관리
- * 로그인 기록의 저장 기한도 영상정보 저장기간과 동일하게 60일 이상으로 함

-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, 보관할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.

Q25

CCTV 설치 후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CCTV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'CCTV 내부 관리계획'을 수립·작성해야 합니다.
- 관리책임자(또는 위임받은 운영담당자)는 CCTV 설치·운영사항을 주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대장(별지 제12호 서식)에 기록하며,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Q26 CCTV 영상정보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?

- 시설 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, 보관기관이 지난 영상정보는 시설 자체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3개월(90일)을 초과하기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.
-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을 요청받았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추가 보관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.

Q27 열람 요청받고 열람 완료 전에 60일이 넘어서 자동 삭제되었습니다. 행정처분이 있나요?

- 60일이 넘어도 삭제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'보관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'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(50 ~ 150만 원) 대상입니다.

Q28 CCTV 필수 설치장소가(계단 등) 아닌 곳도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저장해야 하나요?

- 시설에 설치된 모든 CCTV 운영·관리에 대해서는 필수 설치장소 유무와 상관없이 법 제33조의2 및 33조의3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따라서 CCTV 필수 설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합니다.

Q29

CCTV 운영담당자가 점검 중에 실수로 영상 일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?

-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부과(50 ~ 150만 원) 대상입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의 유출·오남용·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,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.
 - 따라서 영상정보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Q30

모니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나요?

- CCTV 설치 목적은 상시 모니터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상시 확인을 위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.
 - * 학대 등 안전사고 의심 시, 수급자 및 보호자 등의 “열람 요청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
 - 모니터도 영상 송출 장치와 함께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시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, 단순히 화면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의 화면은 꺼두셔도 됩니다.
- 만약 특정 시간(야간시간)에 입소자의 상태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, 지정된 모니터링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평소에는 화면을 꺼 놓는다거나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를 통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Q31

CCTV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받지 않은 종사자가 영상정보를 취급할 수 있나요?

-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.
- 이를 미준수 할 시, CCTV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(25 ~ 75만 원) 대상입니다.

Q32

CCTV 관리 전문 업체를 통해 시설 내 CCTV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, 열람 등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.

Q33

수탁자 교육방식 및 기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, 처리현황을 점검하는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.
-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, 이수증(수료증)을 시설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.

Q34 수급자 및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?

- ①수급자가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영상을 확인할 목적, ②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* (의학적 소견서) 의사의 진찰 결과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기재된 '진단서'를 의미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(관리책임자)는 열람 장소와 일시 등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고 열람조치는 회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열람 요청자와 관리책임자가 협의된 경우는 즉시 열람 가능하며,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즉시 열람케 하여야 합니다.

Q35 CCTV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,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영상이 소실·훼손된 경우,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* 되는 경우
- * 기관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열람 요청하는 경우, 보호자가 수급자의 단순 안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

Q36 CCTV 열람 후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?

-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후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(별지 제10호 서식)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-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
Q37 수급자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, 관리책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(관리책임자)는 열람 조치 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,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보호자란 '수급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4촌 이내 친족'을 말합니다.
- * 「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 1. 총칙 - ② 용어의 정의 참조

Q38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, 영상 자료의 열람은 요청자 및 관리책임자만 할 수 있나요?

-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열람 요청자(수급자, 보호자) 및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(관리책임자)만 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 요청자(수급자, 보호자)의 동의가 있으면 종사자, 관계공무원,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을 입회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Q39 관계 공무원의 열람 요청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관계 공무원의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 요청은 정당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(신분증 및 공문서)로 할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 공무원이 수급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 요청 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 -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,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

Q40 노인관련 안전업무 수행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열람 요청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노인 관련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'노인보호전문기관'을 말하며,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신분증 및 서류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열람 요청 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 -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,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영상이 소실·훼손된 경우,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* 되는 경우
- *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노인관련 안전업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
-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,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와 동행하거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열람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.

Q41

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열람자(수급자 및 보호자)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.

* (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

Q42

보호자가 CCTV 열람 시 모자이크 처리 후에 보여줘야 하나요?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CCTV 열람 시,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수급자 및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(관리책임자)이 합의하여 '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'에서 열람 범위를 결정하고, 열람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Q43

보호자에게 CCTV 영상을 제공(반출)할 때,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?

- 수급자 및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시설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(ex.모자이크)를 해야 합니다. * 관련 :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

Q44

CCTV 열람 요청자가 다수(2인 이상)일 경우 영상을 다함께 열람할 수 있나요?

- 열람 요청자가 다수(2인 이상)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 시 요양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(관리책임자)는 CCTV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*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

Q45

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학대 예방의 사유로 CCTV 열람이 가능한가요?

-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자·보호자(자료의 요청자) 및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(관리책임자)가 할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보호자일 때, 노인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 후 열람이 가능하나,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CCTV 열람은 불가능합니다.